2016 하반기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점검 사례

- 지방자치단체 규제 관련 행태 · 부조리 중심 -



행정자치부
Ministry of the Interior

목 차

규제 남용

부당한 조건부여로 기업 이익 제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부여 06
2. 군 허가사항을 도 협의사항으로 판단, 민원인에게 부당한 부담 증가 06

계약이행에 따른 법령상 의무 위반

1.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방치 07
2. 시설사용료 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임의 집행 08
3. 변경계약 없이 신규비목 추가 후 준공검사 시 변경계약 09
4. 법령상 기준보다 축소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09

법령을 위반한 인 · 허가 처리

1. 사전검토를 이유로 민원서류를 임의 보관 후 접수 처리 10
2. 특정 일반건설업체 등록말소 처분 장기간 지연 처리 10
3. 민원서류 임의 보관 후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11
4.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없는 다중이용업소 신고 수리 12
5.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을 변경공고 절차 없이 일반채용으로 변경 1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1. 주 · 정차 위반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13
2.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시 및 관용차량 사적 이용 14
3. 근무시간 중 저녁식사 내기 화투 행위 15
4. 동료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 갑질 행위 15

5. 용역중지 기간 중 업체에 추가 비용지급 없이 보완 요구 16
6. 도청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관할 시청 공무원이 수행 17
7. 군청 소속 공무원 소유 토지에 특혜성 도로 포장 17
8. 시설부대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부당 사용 18
9. 특정인에게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및 무상사용 특혜 제공 19
10. 용역과업설명서 사전 유출 등 특정업체 특혜 제공 19
11. 자격이 없는 상급기관 간부에게 관사 무상사용 특혜 제공 20

소극 행정

행정편의 위주 불필요한 제한

1. 민원서류 보완기간 임의 설정 21
2. 의료장비구입 대금을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 22
3. 공사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 22

선례답습적인 행정처리

1.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 23
2.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미감면 24
3.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미감면 24
4. 토지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에게 미통보로 이의신청 제기 초래 25
5.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 미지급 관리감독 소홀 26
6. 용역업체 점검실적이 과업지시 기준 미충족에도 용역대가 지급 26

무사안일 업무행태

1. 의료단지 부지에 체육시설 개발행위사업자 선정 후 반려 처분 27
2.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28
3. 공제대상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부담 증가 29
4. 3차례 동일한 민원답변을 하다가 정보공개청구에는 사실대로 답변 29
5. 공무원 개인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시 예산으로 납부 30
6. 공사계약기간을 변경하면서 선금 보증기간은 미연장 31
7. 승소 및 상대방의 소 취하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징수 31

비용 전가

계약시 필수 반영 경비 기업체 전가

1. 전산개발 인건비 등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 32

과업내용에 없는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

1. 설계용역 및 공사업체에 행정절차 이행 등 각종 비용 전가 33
2. 용역중지 기간 중 추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33

처리 지연

인 · 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근거 없는 '보류 결정', '자문' 등으로 지연 처리 34
2. 도로점용사업계획 심의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사업자 불편 초래 35
3. 미술관 등록신청 민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지연 처리 36
4. 하천공사 시행허가 민원 지연 처리 37
5. 개발행위허가를 심의위원 · 주민의 비공식 의견 · 민원을 이유로 지연 처리 37
6. 새올시스템에 '보완요청'을 허위 입력하여 민원처리기한 부당 지연 38
7. 규제개선 대상 조례 정비 미이행 39
8.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 지연 처리 40
9. 준공검사 및 공사대금지급 처리기한 미준수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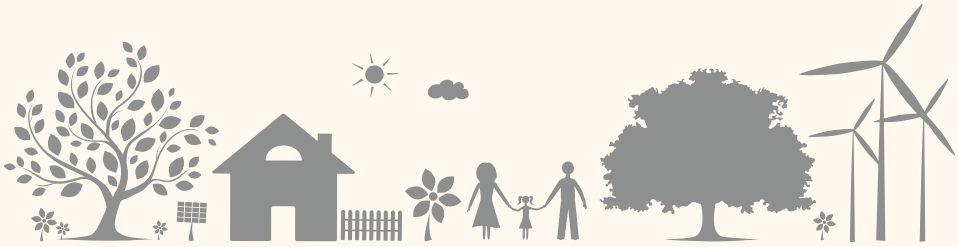
기업진입 규제

부당한 입찰 참여 기회 제한

1. 설계용역 원가를 부당하게 삭감한 후 수의계약 체결 41
2. 시스템 호환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42

불공정 거래행위

1. 과업지시서에 설계용역비를 증액 청구 할 수 없도록 규정 43



규제 남용

부당한 조건부여로 기업 이익 제한

1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적 근거 없는 조건 부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되고, 민원을 접수 · 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6년 태양광발전시설부지조성 등 6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개발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 · 의결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거나 개발행위 대상 지역 인근 골프장 사업주와 사전 협의 또는 지역주민들의 동의 등 법령에 근거 없는 내용을 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추가적인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주고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군 허가사항을 도 협의사항으로 판단, 민원인에게 부당한 부담 증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36조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설치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5. 9. 15. ○○○ 등 6인이 제출한 △△군 △△면 △△리 △번지에 우렁이 양식을 위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민원은 지목변경 없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처리가 가능함에도 농지전용허가 대상으로 판단하여 7차례에 걸쳐 △△△도 협의를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토록 민원인에게 요구하였고, 민원인이 △△△도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자, △△△도 △△△과에서는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결과 △△군에서는 2016. 7. 3.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을 취하하고 다시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여 민원처리 완료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협의 및 서류제출 등으로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계약이행에 따른 법령상 의무 위반

1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연지급 행위 방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가 하수급자 등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고지하고,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된 선금을 하수급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5. 1. 1.부터 2016. 10. 31.까지 (주)ㅇㅇ건설 등 18개 원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업체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ㅇㅇ건설(주) 등 30개 원도급업체가 (주)ㅇㅇㅇㅇ개발 등 35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금 20,772백만원에 대해 15일 이내에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ㅇㅇ건설(주) 등 6개의 원도급업체가 (주)ㅇㅇ건설 등 7개 하수급업체에게 1,100백만원의 선급금을 최소 6일에서 최대 93일간 지연 지급하는 실정인데도 이를 방치하였다.

2 시설사용료 수입을 세입 조치 없이 임의 집행

➤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하며,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광역시 △△△도시관리공단의 위탁계약에 의하면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15. 6. 11. △△△구 축제 추진을 위하여 △△구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2015. 6. 18. 구청으로부터 위탁금 380백만원을 교부받아 제ㅇㅇ회 △△△구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24백만원의 수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세입으로 처리 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공단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변경 절차 없이 축제공연비로 무단 상계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3 변경계약 없이 신규비목 추가 후 준공검사 시 변경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2014. 2. 21. 직장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2014. 3. 6. ○○○○○(주)와 계약(계약금액 131백만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낙찰률(87.75%)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았고, 변경금액을 산출한 증빙자료도 없이, 2014. 3. 27. 준공검사원 제출 이후 2014. 4. 4. 변경계약을 체결 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4 법령상 기준보다 축소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같으며,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사업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방수 공종의 경우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데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령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다르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보수보증서를 제출받아 하자담보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법령을 위반한 인 · 허가 처리

1 사전검토를 이유로 민원서류를 임의 보관 후 접수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광역시 △△소방서 및 △△△도 △△소방서에서는 2016년도 위험물허가 관련 민원과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관련 민원 등 총 168건을 처리하면서 민원서류를 즉시 접수하지 아니하고 보류하였다가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허가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을 하여 다시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민원서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2 특정 일반건설업체 등록말소 처분 장기간 지연 처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제10조 · 제14조 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과에서는 ○○○○(주)가 최근 3년 내 동일 사유로 2차례에 걸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므로 즉시 등록말소 처분대상임에도 6회 10개월에 걸쳐 청문 참석 요청 등으로 등록말소 처분을 지연 처리 한 반면, ○○○○○○(주)의 경우 보증가능금액실효로 동일하게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데도 등록말소 사유 발생 3일 만에 신속하게 등록말소 처분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3 민원서류 임의 보관 후 접수처리 및 개인정보 무단 수집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민원은 민원실(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접수토록 규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및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등에 의하면 법정 민원서식인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로는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 그런데 △△도 △△시 △△△△과 및 △△△도 △△군 △△△△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신청 등 총 21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민원처리부서로 접수하지 않고 허가담당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득하는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4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없는 다중이용업소 신고 수리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의 2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소화설비 등 법정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는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방서장 발행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는 인 · 허가 및 개업신고를 접수 · 처리한 행정기관장은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허가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소방서장은 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 화재진압 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도 △△시에서는 2014. 8. 6. 접수된 다중이용업(일반음식점) 2개소의 개업신고를 2014. 8. 7. 처리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사실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방시설 완비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신고처리를 해 주었고, 그 결과 개업신고 수리 후 2년 2개월여가 지난 2016. 10. 20. 까지도 자동화재탐지기 등 법정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다중이용업 인 · 허가 및 신고처리 사실을 관할 △△소방서에 통보하지 않아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와 예방대책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을 변경공고 절차 없이 일반채용으로 변경

➤ 「△△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 「같은 규정 시행내규」 제3조의2에 따르면 직원 정년퇴직으로 발생된 결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과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준수를 위한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10일전)까지

적절한 공고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시행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광역시 △△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시설관리직 특별 및 공개채용계획'에 따라 시설관리직(환경미화) 4명 중 공개채용 대상 2명은 '시설관리직(환경미화) 공개채용 공고'를 하여 36명이 접수하였으며, 특별채용(국가유공자) 대상 2명은 △△보훈지청에 보훈특별고용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 2016. 5. 27. 3명을 추천받았으나 1명만 접수하였으므로 △△보훈지청에서 특별채용 대상 1명을 추가로 추천받아 채용을 하거나, '시설관리직(환경미화) 공개채용 변경공고' 를 한 후 1명을 채용하여야 함에도 2016. 5. 31. '시설관리직 특별 및 공개채용 변경계획' 이라는 내부결재 문서만 작성한 채 별도의 추가공고 없이 당초 2명을 채용하기로 공고했던 공개채용 분야에서 1명을 초과 합격시켜 3명을 채용함으로써 「△△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1 주·정차 위반 단속자료 조작 및 과태료 부당 면제

➤ 「△△광역시 △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기초질서 지키기 선진화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광역시 △△△△과, '12. 8. 17.)」 등에 의하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범죄 등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조공문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구 △△과에서는 주 · 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하면서 최근 3년간 불법 주 · 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구의원, 교통과장, 교통지도계 소속 공무원 등의 차량에 대해 구의원 등으로부터 무마 청탁을 받고 청탁 증거사진이 촬영 안 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거나 증거사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총 11건의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주었고, 불법 주 · 정차 단속 지침에 따른 주 · 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담당과장, 계장,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심의하면서 면제요건에 맞지 않는 과태료 부과대상 148건을 부당하게 면제하였다.

2 지위를 이용한 부당지시 및 관용차량 사적 이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및 「△△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본부 지방소방정 ○○○는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요일 당직근무자에게 소방서 관용차량을 운행하여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지시하고 동 차량을 이용하여 사찰을 방문하는 등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당직근무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지시하였다. 또한, 제○기 소방서장 현장지휘역량 강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원 지방소방교 ○○○을 대동하여 관용차량을 이용하였고, 본인이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운전원은 중앙소방학교 인근에 숙박 장소를 구해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여 본인의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관용차량 운전원은 계속 대기하도록 하는 등 관용차량 운전원을 본인의 개인 운전원 처럼 부당하게 활용하였다.

3 근무시간 중 저녁식사 내기 화투 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에는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구 △△△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은 2016. 10. 28. 관내 유관단체 협의회장 3명과 함께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봉사활동을 마친 후, "본인의 사무실에 가서 차한잔하며 향후 집수리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관협의체 회장이 저녁내기 화투를 제안하여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유관단체 협의회장 3명과 함께 약50분 동안 근무시간 중 화투놀이를 하였고, 당시 회의실 복도를 지나가던 민원인이 화투놀이 장면을 촬영하여 방송국에 제보되어 뉴스에 방영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4 동료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등 갑질 행위

➤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 지방행정주사 ○○○은 △△△△과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 같은 과 소속 직원인 지방행정서기 ○○○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으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시에 부시장, △△△△국장, 시의원 2명 등과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중에 ○○○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차례 폭언성 발언으로 인하여 ○○○는 2016. 10. 24. 함께 일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감사담당관실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한 후 휴직원을 제출하여 휴직

처리됨으로써 지방행정주사 ○○○은 동료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등 언어폭력 행위로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5 용역중지 기간 중 업체에 추가 비용지급 없이 보완 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6조, 제30조, 제30조의2 규정에 따르면 계약 내용은 신의 ·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계약 기한까지 해당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 그런데 △△△도 △△시에서는 2015. 5. 18. '시청사 증축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90백만원)'을 계약 · 추진하면서 용역이행률이 20%~30%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용역업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검토 없이 2015. 9. 4. 용역업체인 (주)○○○○○에서 경관심의 등 행정처리를 위해 약 70일간의 용역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2015. 9. 7. 용역업체의 요청대로 용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회계과장 결재)한 후, 기간연장 시 용역비 증액 등 문제를 우려하여 같은 날 용역을 일시 중지하는 것으로 다시 보고(부시장 결재)하고 실제로는 용역업체에 계속 보완요구를 하는 등 2015. 12. 29.까지 7개월간 용역을 이행하도록 하고도 계약금은 당초 계약한 대로 4개월분만 지급하고 용역중지 조치를 한 3개월 동안은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계속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 도청 소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업무를 관할 시청 공무원이 수행

➤ 「△△△도 도시계획 조례」 제13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회의록은 서기가 서명한 후 간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보관하며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도 △△△△과에서는 2015. 4. 3. '제○차 △△△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하면서 회의록 작성을 위해 녹음을 하였으며, 녹음 내용을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나 과중한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파일로 보관하던 중 △△시에서 회의내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회의내용을 정리하지 못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녹취된 파일을 요구하자 비공개 보관 등 검토가 필요한 녹취된 음성파일을 공직자 통합메일을 이용해 △△시 관계자에게 임의 유출하였고, △△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 △△△△과에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시에서 대신 작성토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 군청 소속 공무원 소유 토지에 특혜성 도로 포장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에는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에서는 2016년 'ㅇㅇ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를 추진하면서 재무과 경리담당이 △△△△과 공사담당공무원에게 본인과 △△군 소속 간부공무원인 △△△△과장, △△△△△△소장, △△면장 등 4명이 공유하고 있는 △△읍 △△리 △번지(답, 639㎡) 소재 농지에 대하여 콘크리트 포장(L : 93m, B : 4m, 공사비 약 15,000천원) 공사를 부탁하였고, 이에 △△△△과 공사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ㅇㅇ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비 중에서 일부를 투입하여 군청 소속 공무원의 사유지에 콘크리트 도로 포장 공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황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등 정상적인 설계도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8 시설부대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부당 사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와 △△△△사업소에서는 2016.10월 재난위험교량개축공사, 도로유지관리사업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위한 현황측량조사, 하수도개량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락카, 줄자, 미터기 등 물품구입을 하면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업체와 사전에 협의한 후, 구입물품의 수량을 부풀려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결재를 득하여 일부 물품만 납품받고 7,350천원 상당의 나머지 물품은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회식비 등 부서 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9 특정인에게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 및 무상사용 특혜 제공

➤ 「△△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2에 따르면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 예약접수는 사용예정일 30일 내로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가예약 후 3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예약시스템 관리자에게는 시설물의 수리 · 임시폐쇄 등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예약가능 숙소가 공개되기 일주일 전에 먼저 예약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였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6년 ○○휴양림 숙박시설 예약업무를 처리하면서 군수 비서실로부터 군수 지인 등 방문 시 제공할 숙박시설 예약 부탁을 받고 예약이 가능한 기간(사용예정일 30일 이내)이 아님에도 부당하게 예약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예약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공공시설물 이용에 특혜를 제공(15회)하였고, 또한 2016년 △△△△과 직원 단합행사 시 △△△△과장이 직원들이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여 4개의 객실을 직원들이 이용하였음에도 마치 예약이 취소되어 객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 530천원을 수납하지 않고 이용하게 하였다.

10 용역과업설명서 사전 유출 등 특정업체 특혜 제공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2조,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단장 지방행정주사 ○○○는 △△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탁기관인 △△△△△공사 △△지사 ○○○ 과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인 2015. 4. 17. 비공개 자료인 '2015년 △△군 지역역량강화사업용역' 과업설명서를 이메일로 받고, 같은 날 △△군 발전협의회 위원인 △△△회사 ○○○사장에게 전달하여 사전에 제안요청서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공사 △△지사와 '2015년 △△군 지역역량강화사업용역'을 수의계약(계약금액 78,970천원)하는 특혜를 제공 하였으며, 2015. 12. 31. △△군에 제출된 위 용역의 정산서가 포함된 준공승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회의부대비로 집행한 식대 영수증 등이 컴퓨터 사진편집기로 조작한 허위영수증(55건, 3,255천원)이었음에도 이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11 자격이 없는 상급기관 간부에게 관사 무상사용 특혜 제공

➤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0조, 「관사사용 및 관리지침(△△시시설관리공단)」 제5조 등에 의하면 △△시 '△△사업소 관사'는 △△시 소유이나 2007. 1월부터 △△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관사사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시나 공단직원, 기타 시정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필수요원으로 △△시장이 추천한 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관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도 △△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4. 12. 1. △△시 △△△△과로부터 △△△도 △△△△△본부 근무 직원들의 숙소이용 편의제공을 위해 △△시 △△사업소 관사 4개동의 사용협조 요청을 받고 2014. 12. 15. △△△△△본부 본부장 ○○○ 등 8명(2인 1실)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8. 관사 4개동에 입주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런데 △△△△△본부장 ○○○의 경우 7개월 후인 2015. 7. 3. △△에 소재한 △△△도 △△△△국장으로 인사 발령되어 관사 사용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으며, 2016. 11. 7. 감사일 현재까지 약 16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소극 행정

행정편의 위주 불필요한 제한

1 민원서류 보완기간 임의 설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구 △△과에서는 2014. 4. 24. (주)○○주택으로부터 방음벽 철거 행위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민원처리 만료일인 2014. 5. 1.에 방음벽 철거에 따른 구조 안전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2014. 9. 30.까지 1차 보완요구를 하였고, 2차 보완요구는 10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회신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임의 지정하였으며, 민원인은 2014. 10. 31. 민원을 취하하였고, 이후 2014. 12. 23. 동일한 민원을 접수 · 처리하면서 당초 보완요구한 구조안전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2014. 12. 30. 행위허가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보완요구로 인하여 민원을 8개월 정도 지연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의료장비구입 대금을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

➤ 「△△△도 △△의료원 회계규정」 제178조에 의하면 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 제조, 매입 기타 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 검사조서를 작성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도 △△의료원에서는 2016. 2. 22. △△△△(주)와 사업비 126,300천원에 이동식 X선 촬영기를 2016. 4. 30.까지 납품받기로 계약 한 후 계약자가 납품 기한 이내인 2016. 4. 12. 납품 완료 후 같은 날 대금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일로부터 29일째에 해당하는 2016. 5. 10.에 지급하는 등 12건 939,169천원의 의료장비구입 대금을 최소 6일내지 최대 51일간 지연 지급하였다.

3 공사대금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후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지급

➤ 「△△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관련 법령과 의료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 지시에 따르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원 회계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회계에는 재정상의 자료를 체계적인 정규부기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도 △△의료원에서는 2014. 12. 30. ○○건설(주)로부터 기숙사 전기공사 준공금(185,543천원) 지급청구를 받아 처리하면서 당시 ○○건설(주)는 법원으로부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ㅇㅇ건설(주)가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비 및 이자 45,295천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은 사항이 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 시 공탁금(45,29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준공금(140,248천원)은 ㅇㅇ건설(주)가 제시한 통장계좌번호로 지급기한 내에 입금하여야 하는데도 준공금(185,543천원) 전액을 근거도 없이 △△의료원의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임의로 입금하였다가, 2015. 1. 15. 공탁금으로 45,295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준공금 140,248천원은 지급기한을 4일 초과하여 ㅇㅇ건설(주)에 지급하였다.

선례답습적인 행정처리

1 부정급수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미지급

➤ 「△△군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1항 및 「△△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군수는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군민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군 △△△△사업소에서는 2014년~2016년까지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 총 5,400천원(연도별 1,800천원)을 편성해오고 있으므로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등에게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0명이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였거나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도 △△△△△공사 △△수도센터에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내용 확인이나 포상금 지급 없이 방치하고 관련 예산은 불용처리 하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2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미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및 제183조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12. 31.까지는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제하고,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취득세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에서는 (주)ㅇㅇㅇㅇㅇ가 2010. 3. 2. 과학기술처(現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증 받은 후 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시 △△면 △△리 소재 건물과 (주)ㅇㅇ 등 9개 법인이 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해당 법인이 지방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여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감면규정 등을 검토하여 감면대상이면 해당 법인에게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하는데도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과세한 결과 (주)ㅇㅇㅇㅇㅇ는 취득세 등 2,167천원, (주)ㅇㅇ 등 9개 법인은 재산세 등 2,481천원이 감면되지 않았고, 향후 별도 환급가산금 319천원(2016. 11. 11.기준)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상수도 요금 미감면

➤ 「△△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관내에 지방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하수도 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 △△△△과에서는 「△△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수도요금 지원 계획」에 따라 관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기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지원 대상기업은 매월 수도사업소로 통보하고, 수도사업소에서는 적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

➤ 그런데 △△시 △△△△과에서는 (주)ㅇㅇㅇㅇㅇ은 2014. 12. 26. △△△농공단지에 입주하였고, ㅇㅇㅇㅇㅇㅇㅇ(주)은 2016. 3. 13. ㅇㅇ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사실을 수도사업소에 통보해 주지 않아 2014. 12. ~ 2016. 10. 기간 중 상수도 사용료 1,668천원을 감면해주지 못하였고, 별도의 과오납환급금 이자 26천원(2016. 11. 11.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토지보상계획 공고 시 토지소유자에게 미통보로 이의신청 제기 초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6년 ㅇㅇㅇ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6. 4. 8. 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15일간(2016. 4. 8. ~ 4. 23.) 공고하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2016. 5. 3. 에서야 통보하여 민원인들이 열람기간을 경과하여 보상계획을 통지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ㅇㅇㅇ 등 4명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재공고기간을 별도로 추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 미지급 관리감독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하고, 계약담당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자에게 선금이 배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고 반환된 선금을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직불 합의 또는 직접 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한 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원도급사 45개 업체에 선금 11,681,538천원을 지급하면서 하도급사 77개업체에 지급되어야할 4,916,184천원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청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2016. 11. 10. 감사일 현재까지 하도급사 77개 업체에 지급되어야 할 선금 4,916,184천원이 지급되지 않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6 용역업체 점검실적이 과업지시 기준 미충족에도 용역대가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에서는 '2016년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의 감독 업무를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인 (주)ㅇㅇㅇㅇ가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계약상 10개월 동안 매월 1회 45개소를 점검(총 450개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총 363개소를 점검하고 일부(87개소)는 점검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업체가 청구한 용역대금 9,050천원을 검토 없이 그대로 용역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무사안일 업무행태

1 의료단지 부지에 체육시설 개발행위 사업자 선정 후 반려 처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에서는 2015. 1. 30. 개발제한구역 내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에 따라 '△△읍 △△리 △번지'를 사업부지로 신청한 ㅇㅇㅇ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해당부지는 의료복합단지조성 대상지로 △△도시공사에서 2012. 5. 4. 시 △△△△과에 협조문서로 요청한 바 있고, 2014. 4. 4. 조사설계용역 입찰공고, 2014. 9. 11. 환경 · 교통영향평가용역 입찰공고, 2015. 7월에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 등이 추진 중에 있었는데도 시 △△△△과에서는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정고시 등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고, 의료복합단지사업계획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의료복합단지조성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사업자는 의료복합단지조성계획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0. 26. 주민의견 청취 시 접수된 의견(12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2016. 2. 22. 시에 제출하였고, 2016. 3. 14.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부적합 사유로 최종 부결되어 2016. 3. 24. 시에서 사업자에게 행위허가 신청반려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취소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2016. 5.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7. 24.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위허가신청 반려 및 실외체육시설 선정대상 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인용재결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 저하는 물론 사업자는 투자비용(240백만원) 손실 발생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2 출자금 기준 미충족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1조 및 제91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서를 심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5」에는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농업법인을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시 △△△△센터에서는 2014. 3. 19.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대상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등을 확인하면 출자금이 10백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징구하지 않고 사업신청서에 자산 16억원, 연매출 30억원이라고 기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4. 4. 25. 농정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한 후 △△도 추천 절차를 거쳐 ○○○○영농조합법인이 총 1,890백만원의 보조금(국비 1,350백만원, 시비 540백만원 / 자부담 810백만원)을 받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특혜를 주었다.

3 공제대상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운영에 부담 증가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도 △△시에서는 시설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는 △△종합체육관과 복지센터 건물신축에 투입된 시설투자비(종합체육관 28,788,000천원, 복지센터 1,447,000천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종합체육관 2,249,423천원, 복지센터 131,576천원)신고 당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신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16. 11. 14. 감사일 현재까지 관할 세무서에 공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4 3차례 동일한 민원답변을 하다가 정보공개청구에는 사실대로 답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의 기준 중 보관시설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에서는 2016. 5. 10. 주식회사 ○○이 제출한 "○○○ 재활용 업체 재활용 허가용량 검증요청" 민원을 처리하면서 재활용허가 6개 업체는

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일분 이상의 폐기물 보관시설 실측이 불가능한데도 2016. 5. 17. “귀 사에서 요청한 검증 건의는 이미 처리 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다시 검증 등의 절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민원회신 하였고, 2016. 5. 18. 2차 민원제출, 2015. 5. 26. 시청 방문, 2016. 6. 13. 3차 민원제출에도 △△시 △△△△과에서 최초 민원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자, 주식회사 ○○은 2016. 6. 13. “○○○ 재활용 업체 재활용 허가용량 실측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고, 이에 △△시 △△△△과는 2016. 6. 24. 폐기물 보관시설 용량 실측자료가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민원 최초 제기일로부터 43일이 지난 후에야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려 주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공무원 개인 부담분 건강보험료를 시 예산으로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에서는 소속 공무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무원 개인부담 건강보험료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액이 7,283,330원 부족하다는 통보를 회계과로부터 받고, 원천징수액 부족 원인 파악 및 정산 등의 조치 없이 공무원 개인부담 건강보험료 부족분을 시 국민건강보험금 예산과목에서 지출하기 위해 기 회계과에 통보한 문서에 기재된 공무원 개인부담분 150,855,260원(50%)을 143,571,930원으로 수정하여 7,283,330원을 감액시키고, 기관부담분 150,855,260원(50%)을 158,138,590원으로 수정하여 7,283,330원을 증액 지출하는 것으로 수기로 수정하여 회계과에 지출 요청하는 등 2015년 4월분과 5월분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공무원 개인부담분 건강보험료 13,283,330원을 부당하게 시 예산에서 지출하고도 1년 6개월여가 지난 감사일 현재(2016. 11. 14.)까지 정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6 공사계약기간을 변경하면서 선금 보증기간은 미연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약기간이 변경되어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도 서부권역 ○○○○○사업 등 6건에 대해 계약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개월 이상 연장하면서 계약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받지 않는 등 선금에 대한 채권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7 승소 및 상대방의 소 취하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징수

➤ 「△△도시공사 소송업무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회수와 강제집행 수행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소로 확정되었거나 소송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확정된 금액을 소송상대방에게 임의이행 청구하거나 강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법원의 소송비용이 확정된 41건 801,765천원 중 22건 121,945천원은 징수하였으나, 18건 679,819천원은 2016. 11월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비용 채권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비용 전가

계약시 필수 반영 경비 기업체 전가

1 전산개발 인건비 등을 설계내역에 반영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르면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구매에 따른 별도 설치나 최적화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건비, 기술비 등을 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실에서는 2016년 도내 기상관측 및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통합경보시설 연계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관급자재 구매(계약금액 332,200천원)'건은 신규 전산개발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계내역에 인건비 등은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만 계상하였으며, 서버와 운영체제를 분리 구매하면서 운영체제 설치 인건비 등을 설계내역에 계상하지 않아 운영체제 납품업체에서 설치 인건비 등으로 3,360천원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긴급재난 대응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신규서버 최적화 작업을 위한 인건비와 시·군 클라이언트 장비 설치에 따른 출장비용, 교육교재 인쇄비 등을 원가내역에 반영하지 않았고, 교재 및 교육비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하는 등 계약업체에 각종 비용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업내용에 없는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

1 설계용역 및 공사업체에 행정절차 이행 등 각종 비용 전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4년도에 'ㅇㅇ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금액 285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도로 · 하천점용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업중지요청서를 용역업체에서 제출토록 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시킨 후, 업체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행정절차 완료 후에는 용역업체에 과업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ㅇㅇ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약금액 3,488백만원)'을 추진하면서 현장사무실 설치 · 운영비를 1차분 계약에는 38백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한 후, 2차분 계약에는 해당 비용을 반영해주지 않아 4개월분(8백만원)의 현장사무실 경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등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각종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2 용역중지 기간 중 추가 과업지시를 하면서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공사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사의 회계에 대하여 공사의 규정 또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도 △△도시공사에서는 2016년 △△△△△ 개발사업 기본구상용역 등 3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 추가편입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의 사유로 용역업체에 용역 중지 요청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여 용역을 중지시키고, 용역 중지 상태에서 용역업체에 추가 과업을 수행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아 용역업체에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 · 허가 등의 민원처리 지연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근거 없는 '보류 결정', '자문' 등으로 지연 처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에서는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재심의 할 수 있고, 재심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구 △△△△과에서는 (주)○○ 대표 ○○○○이 2015. 10. 14. 신청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건'을 2015. 11. 18. 2015년 제3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반안정성 검토, 옹벽구조 안정성, 재해위험성 최소화를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의 사유로 관련 규정에도 없는 '보류'로 결정하였고, 2016. 5. 25. 민원인의 두 번째 심의요청에 대해서는 2016. 6. 21. 전문가 등의 재검토 필요 사항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서만 발송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 또한, 민원인이 2016. 6. 29. 촉구 문서를 제출하자, △△구에서는 2016. 6. 29. 8~9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으며, 민원인이 2016. 7. 1. 위원회 상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문서를 다시 제출하자, △△구에서는 2016. 7. 4. 대학교수(2명)에게 법령 등 규정에도 없는 자문을 실시한 결과 "건축계획은 양호하나, 건축부지에 대한 사면안정 해석 및 절개지 옹벽 배면 비탈부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 하여 8월에 조건부 심의키로 하고, 민원인에게 2016. 7. 5. 8월중 심의하겠다고 회신 하였고, 2016. 8. 25. 2016년 제1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중 위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외출하여 정족수가 미달되자 심의결과 처리방법에도 없는 '보류'로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2016. 10. 25. 감사일 현재까지 1년여 간 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게 하는 등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2 도로점용사업계획 심의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사업자 불편 초래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점용기간 · 점용장소 · 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1월 · 4월 · 7월 · 10월)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구 △△과에서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2건의 심의 안건을 접수 · 처리하면서,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자들에게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에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견을 처리기한을 최소 9일부터 최대 35일이 지나서야 통보함으로써 도로의 굴착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도시가스, 통신, 전기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하게 되는 등 사업자들에게 불편을 가져왔다.

3 미술관 등록신청 민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지연 처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20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기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 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받은 기관 ·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이를 처리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과에서는 2015. 12. 23. △△시에서 제출한 '△△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록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29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6. 1. 22. 관계부서에 협의 문서를 보내고, 2016. 1. 26. 관계부서와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보완 완료를 2016. 3. 17. △△예술의전당사업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즉시 미술관등록 등

후속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6. 3. 31. 미술관 등록을 완료하고 2016. 4. 1. △△시에 미술관 등록을 통보함으로써 미술관 등록 민원 처리를 43일간 지연하여 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하천공사 시행허가 민원 지연 처리

➤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대하여는 그 처리기한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하천공사시행허가 등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2014. 9. 22. △△공사에서 신청한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 및 공사시행허가 신청" 에 대하여는 2014. 11. 11. 처리 통보하였고, 2016. 4. 20. △△개발공사에서 신청한 "△△혁신도시 원천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2016. 6. 1. 처리 통보하는 등 해당 민원신청에 대한 법정 민원처리기한인 20일을 초과하여 각각 30일, 22일간 지연하여 처리하였다.

5 개발행위허가를 심의위원·주민의 비공식 의견·민원을 이유로 지연 처리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과에서는 2016. 2. 16. ○○○ 등 4명이 제출한 '건축신고 및 공작물축조신고(단독주택)' 민원은 2016. 2. 25. △△군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는데도 당시 위원 1명이 "단지 내에 조경이 너무 없고,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지 않으니 조경시설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는 비공식 권장 의견을 사유로 2016. 3. 14. '단지 내 조경계획 재검토'를 보완요구 하여 민원인은 조경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2016. 4. 26. 제출하였으며, 2016. 5. 11.에는 '절토사면 상단부분 배수처리계획 재검토' 및 '측량기술자 자격증 제출'을 사유로 추가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6. 7. 7. 보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비공식 민원을 사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 군계획위원회 심의 · 의결일(2016. 2. 25.)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6. 11. 7.에서야 개발행위허가(협의) 통보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시간적 ·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6 새올시스템에 '보완요청'을 허위 입력하여 민원처리기한 부당 지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처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시 △△△△과에서는 2015. 12. 23.부터 2015. 12. 31. 기간 중에 접수된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민원 30건을 처리하면서 인사발령으로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 숙지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민원인에게는 실제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새올시스템에는 “보완요청”을 한 것처럼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기한을 부당하게 연장하여 해당 민원의 법정처리일수가 5일임에도 최소 37일부터 최대 142일까지 지연 처리하였다.

7 규제개선 대상 조례 정비 미이행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책자전파(‘15. 12. 30.)」 공문을 통해 주민불편, 부담완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과제로 선정된 51건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례를 가급적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협조요청을 하였다.

➤ 그런데 △△△도 △△시 △△△△△△△△실 지방행정주사 ○○○은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 12. 30.에 법제처로부터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규제개혁업무담당자가 2016. 1. 25.부터 육아휴직을 하자 규제개혁업무를 전담하면서 조례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6. 4. 1. 규제개혁업무담당자가 새로 발령된 이후에도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규제개혁업무담당자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스스로 조례개정 관련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6. 7. 4.에 조례개선 공문을 관련 부서에 발송할 때까지 6개월간 방치하였고,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2건은 2016. 11. 16. 감사일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8 국민신문고 이송 민원 지연 처리

➤ 「△△도시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민원소관부서장은 민원사무를 관련 법령과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민원 소관 부서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때에는 소정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하는 등 처리기간 연장과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2016. 3월부터 10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서 이송된 20건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을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져왔다.

9 준공검사 및 공사대금지급 처리기한 미준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16. 1. 15.부터는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사 계약사무 처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발주부서장은 검사당일 또는 검사완료 후 즉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대가 지급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서류 수령 즉시 계약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품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신도시 출토 문화재 이전 복원공사(계약금 115백만원) 업체로부터 2015. 11. 6. 준공검사원을 제출 받고 준공검사 완료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21일을 경과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각종 공사계약이행 완료에 따라 계약업체의 대금 청구에 따른 계약 대가를 지급하면서 9건(준공금액기준 190백만원)의 공사 준공금은 특별한 사유 없이 대금지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1일내지 최대 14일을 지연시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용에 지장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당한 입찰 참여 기회 제한

1 설계용역 원가를 부당하게 삭감한 후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용역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은 일반입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수의 2인 견적에 의해 계약하여야 하며, 건축설계용역 등 기술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인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산정하고,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 △△군 및 △△△도 △△시에서는 문화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또는 도로포장실시설계용역 등 70건의 용역계약(계약금액 총1,347,638천원)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20백만원 이하로 임의 조정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타 업체의 입찰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시스템 호환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 「△△도시공사 회계규정」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등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특정인의 기술 ·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 구조 · 품질 · 성능 ·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어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 ·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 · 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2016. 9. 28. ○○○○스포츠센터 탈의실 락카 전자키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면서 기존에 주식회사 ○○○○시스템에서 ○○○○스포츠센터에 회원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을 납품하였고 이와 연동되는 전자키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주식회사 ○○○○시스템이 아닌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호환성 유무 시험이나 사용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주식회사 ○○○○시스템과 2016. 10. 13. 수의계약을 체결(계약금액 48백만원)함으로써 특정기술이 필요할 경우 특정 기술업체의 기술지원 협약서를 바탕으로 일반경쟁 입찰을 거쳐 다수

기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항임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타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공정 거래행위

1 과업지시서에 설계용역비를 증액 청구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부문 용역의 예정가격 산정 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고,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자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광역시 △구에서는 2016년 'ㅇㅇ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건축 및 소방부문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발주기관은 설계비가 예정 공사비보다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계획변경으로 시설규모가 다소 증가되는 경우 또는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다소 증가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설계비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

2016 하반기 규제개혁 저해 실태 특별점검 사례

발행일 | 2017년 3월
발행처 |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 화 | 02-2100-3149 FAX 02-2100-3168